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 제2차 유엔 BBNJ 국제문서 성안 정부간회의 -

2019. 5. 22.

박수진, 김대경

해양연구본부

목 차

. 출장목적 및 일정
1. 출장목적, 출장자 및 출장기간
2. 출장지 및 출장세부일정
II. 제2차 BBNJ 정부간회의 결과 ···································
1. 우리나라 정부대표단
2. 제2차 BBNJ 정부간회의 의장 및 참석대상 ·······
3. 제1차 정부간회의와 제2차 정부간회의 결과 비교
4. 제2차 BBNJ 정부간회의 주요결과
Ⅲ. 부록 ···································
1. 제2차 유엔BBNJ 국제문서 성안 정부간회의 회의사진 ··········· 2

출장목적 및 일정

출장목적

- 본 출장은 2018.3.25.(월)~4.5.(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2차 국가관 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해양법 협약 하의 법적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개발을 위한 정부간회의'의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최근 국제논의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우리나 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출장이었음.
- O 2017년 유엔총회 결의 72/249(UNGA Res. 72/249)에 기초하여 '국가관할권 이 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에 관한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2/249))' 가 설치되었음.
 - ※ ABNJ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을 약칭하여 일컬으며, BBNJ 회의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회의(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를 약칭함.
- O 2006~2015년 10년 동안 9차례에 걸쳐 BBNJ 임시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15년 유엔총회 결의 69/292(UNGA Res. 69/292), 2016~2017년 4차례 진행된 준비위원회, 2017년 유엔총회 결의 72/249(UNGA Res. 72/249)와 그에 따른 2018년 제1차 정부간회의 결과 등을 기초로 제2차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음.
 -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2018년 하반기 1회, 2019년 2회, 2020년 상반기 1회 등 총 4회의 정부간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특히, 2018년 9월 개최된 제1차 BBNJ 정부간회의(IGC-1)에서 회원국들은 의장에게 비공식문서 형태로 협상에 도움을 주는(aid to negotiations) 문서를 작성하여 회람할 것을 요청한바, 제2차 정부간회의는 회람된 동 의장문서의 내용을기반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 2011년 합의된 패키지딜(package deal)에 따른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적 쟁점사항 및 각국의 입장에 대한 의견교환
 - ABNJ 내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유전자원 이용 및 이 익공유,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능력배양 및

해양과학기술이전, 교차이슈 등 의장문서 문언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O 이에 본 출장을 통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 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국제문서의 초안(zero draft) 마련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출장자 및 출장기간

O 출장자: 해양연구본부 박수진 연구위원, 김대경 연구원

O 출장기간: 2019년 3월 23일(토) ~ 4월 7일(일), 14박 16일

__ 출장지

O 뉴욕 유엔본부

☑ 출장세부일정

일자	세부일정	비고
3.23.(토)	부산 → 인천 → 뉴욕	KE1404 3/23(토) 07:55-09:05 KE081 3/23(일) 10:00-11:00
3.24.(일) ~4.5.(금)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사전대책회의(3/24) 제2차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국제문서 개발을 위한 정부간회의 참석(3/25~4/5) 뉴욕 유엔본부 전문작성 및 정부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의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전문가 자문위원
4.6.(토) ~4.7.(일)	뉴욕 → 인천 → 부산	KE082 4/6(토) 14:00-17:20 KE1403 3/23(일) 18:25-19:30

\prod

제2차 BBNJ 정부간회의 결과

🔲 우리나라 정부대표단

○ 우리나라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안국현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정소현 국제법규과 외무사무관, 서수진 사무관, 이은영 글로벌환 경과학과 외무사무관, 이현승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박명래 해양수산부 해양 수산생명자원과 사무관, 김승룡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연구위원, 김대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모영동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외협력부장, 최광천 연구원, 이창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박상준 책임연구원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음.

___ 제2차 BBNJ 정부간회의 의장 및 참석대상

O 이번 회의는 Rena Lee 의장(싱가포르) 및 주요 의제별 비공식 실무협의 조정 관들의 주재 하에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EU 등 100여 개 유엔회원국,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사무국, ISA(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등 10여 개 IGO, OceanCare, Greenpeace, NRDC(Nation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EAFC 등 10여 개 NGO 및 지역수산기구(RFMOs) 등이 참석하였음.

제1차 정부간회의와 제2차 정부간회의 결과 비교

1. 제1차 유엔 BBNJ 정부간회의 결과

- 제1차 유엔 BBNJ 정부간회의('18.9.4.~17.)는 회람된 의장문서(A/CONF.232/2018/3)를 바탕으로 실무협의 조정관(facilitator)들이 해양유전자원(MGR), 지역기반 관리수단(ABMTs), 환경영향평가(EIA), 능력배양 및 기술이전 등 네 가지 이슈에 관한 논의를 진행
 - 이 의장문서는 2016~2017년 준비위원회 논의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2011 년 합의된 패키지딜(package deal)에 따른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적 쟁점사항(의 견수렴사항/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문장형태로 제시
- 각국의 대표들은 의장문서의 쟁점사항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상이한 선택안 (option)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국제문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음.
- O G77+중국은 제2차 IGC 이전에 초안(zero draft) 마련을 주장함으로써 회의의 기속화를 유도하였으나, 일본과 러시아 등 선진국의 반대로 인해 의장은 국가들의 선택안이 반영된 광범위한 문언형태의 문서를 2차회의 이전에 회람하기로 결정

2. 제2차 유엔 BBNJ 정부간회의 결과

- O 제2차 유엔 BBNJ 정부간회의는 의장문서(A/CONF.232/2019/1*)를 바탕으로 각 실무협의 조정관(facilitator)들이 해양유전자원(MGR), 지역기반 관리수단(ABMTs), 환경영항평가(EIA), 능력배양 및 기술이전, 일반사항(cross-cutting issues) 등 다섯 가지 이슈 논의를 진행
 - 의장문서는 준비위원회 결과와 제1차 IGC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옵션을 광범위하게 반영한 동시에 국제협약 문언의 양식을 채택

- 국가들은 이슈별 쟁점사항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의장문서상의 각 선택안에 관한 견해와 새롭게 추가가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하였음.
- O 다수의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의장은 제3차 IGC 이전에 제2차 IGC 내용을 반영하여 온전한 국제협약 문언형태의 초안문서를 회람하기로 결정

제2차 BBNJ 정부간회의 주요결과

1. 해양유전자원(이익공유 문제 포함)

- 효과적인 논의를 위하여 i) 이익공유(3.2.2), ii) 지식재산권(3.2.3), iii) 모니터링(3.3), iv) 범위(3.1), v) 접근(3.2.1) 의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
- (이익공유의 목적) 국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태평양소도서개발도상국그룹(PSIDS) 등을 포함한 개도국들은 이익공유의 목적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 러시아, 미국, 노르웨이 등은 동 규정에 반대
 - 특히 AOSIS와 PSIDS는 소도서개도국의 특별한 경우를 고려할 목적을 주장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내용이 일반사항의 원칙 및 접근법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주장
 - 일본은 능력배양 및 기술이전을 통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해양 법협약(UNCLOS) 제133조(자원) 및 제166조(해양기술이전)에 따를 것을 주장
 - PSIDS는 접근과 이익공유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함을 강조
 - 바티칸시국(Holy See)은 이익공유의 목적을 각 규정에 내포할 것을 제안
 - 베트남과 이란은 문서 전체의 목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유연한 입장
 - 중국은 현 단계에서는 MGR의 세부적인 목적보다 단일규정을 선호
- O (이익공유의 원칙 및 접근법) PSIDS, 아프리카그룹(AG) 등 개도국은 이익공유의 원칙 및 접근법의 세부적인 규정에 찬성한 반면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 스위스, 미국 등은 이익공유에 관한 원칙 및 접근법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대
 - 바티칸시국은 인류공동유산과 공해자유를 합성하는 개념으로 "적절한 고려 (due regard)"의 일반적인 규정을 제안
 - PSIDS, LMLAC, LLDCs, 터키, 베트남, 필리핀, 이란 등은 인류공동유산을 주장 한 반면 러시아는 IGC는 인류공동유산을 고려할 임무(mandate)가 없다고 반박
 - 인도네시아는 두 원칙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기보다 MGR 이용에 관한 독자적 인(sui generis) 체계의 마련을 제안
 - 마이크로네시아는 대륙붕의 연장(대륙붕한계위원회 신청 관련) 및 해수면상승에 따른 경계선 변경효과를, 나우루는 원주민 전통지식에 관한 중요성을 각각 강조
- O (이익) AG, 카리브해공동체(CARICOM), PSIDS, 지리적폐쇄국(LLDCs), 남미국가유

사입장국(Like-Minded Latin American Countries, LMLAC) 등 개도국은 공유이익에 재정적/비재정적 이익을 모두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 러시아,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중국 등은 비재정적 이익만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

- CARICOM, AG, LMLAC,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은 개방적인(non-exhaustive) 이익 목록의 마련을 지지
- 바티칸시국은 MGR의 잠재적/실질적 가치의 구별, 상업적 이용 제약 우려, 이익의 산출은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해당함 등을 강조
- 캐나다는 "비재정적 이익", "이용자" 등 용어의 명확화를 주장
- 파푸아뉴기니(PNG)는 접근시점에 이익공유가 발생함을 주장하면서, 추적가능성, 출처공개 등의 포함을 지지하였고, 콜롬비아는 샘플 출처 모니터링, 과학 정보확산, 생물약탈(biopiracy)방지 방안의 강구를 요청
- O (이익공유 방식) AG, LLDCs, CARICOM 등 개도국은 이익공유 방식을 초안에서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우리나라, 러시아, 미국, 아이슬란드 등은 자발적 방식의 이익공유를 지지
 - EU는 정보, 과학데이터, 지식의 공유를 운영화(operationalize)하고, 과학적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것을 제안
 - G77/중국은 자발적인 이익공유로는 불충분함을 주장
- O (수혜자) PSIDS는 개발도상국인 당사국과 비정부기구가 수혜대상이 될 것을 주장한 반면 LMLAC는 개발도상국만이 수혜자에 해당함을 선호
- O (정보공유체계) G77/중국, PSIDS, AG, EU 등 많은 국가들이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동 규정에 반대
 - 미국과 노르웨이는 정보공유체계가 MGR 이용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데이터 및 과학정보의 확산, 능력배양 및 기술이전, 협력 및 조정 증진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
 - 그러나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는 행동규칙(code of conduct)의 마련에는 반대
- O (지식재산권) G77/중국은 초안문서에 지식재산권(IPRs)을 포함할 것을 지지하였고, CARICOM과 PSIDS는 독자적인 접근방식을 지지한 반면에, EU, 미국,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바티칸시국, 캐나다, 러시아, 우리나라, 호주 등 선진국은 초안문서에 IPR 규정에 반대
 - 한편, 중국과 싱가포르도 선진국과 함께 IPR을 현존하는 메커니즘(예를 들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다룰 것을 주장
- O (모니터링) G77/중국, CARICOM, PSIDS, AG, LMLAC 등 개도국이 모니터링 조치를 포함하는 옵션을 지지한 반면 EU, 미국, 노르웨이, 일본, 우리나라, 러시아, 호주 등은 "no text"를 지지
 - 캐나다와 중국은 제시된 문언이 이용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

- O (두문(chapeau)) EU, 중국,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은 초안문서가 UNCLOS 보다 우선한다는 문언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일본, 뉴질랜드, 미국 등은 유 엔공해어업협정(UNFSA) 제4조를 기반으로 작성할 것을 제안
 - 러시아는 두문규정 전체의 삭제를 주장
- O (지리적 범위) G77/중국, PSIDS 등 개도국과 아이슬란드는 MGR의 지리적 범위를 공해 및 심해저(the Area)로 규정할 것을 선호하였고, CARICOM, 러시아, 호주, 노르웨이 등은 ABNJ에서 접근된 MGR을 범위로 주장한 반면, 미국은 심해저에만 국한됨을 주장
 - 우리나라, 스위스,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등은 지리적 범위를 새로운 국제 문서의 일반적인 규정으로 다룰 것을 주장
 - 특히, 미국은 연안국을 위한 특별한 규정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접 근 시 사전동의절차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
- O (물질적 범위) CARICOM과 PSIDS 등 개도국은 유전적 성질로 연구대상이 되는 어류 및 기타 생물자원이 MGR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옵션과 함께 현지내(in situ), 현지외(ex situ), 가상정보(in silico), 디지털염기서열, 파생물 등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국, 터키, EU, 러시아, 미국, 아이슬란드 등은 상품으로서의 어류 및 기타 생물자원이 새로운 국제문서의 적용에서 배제됨을 주장하면서, ex situ, in silico, 디지털염기서열, 파생물 규정에 반대
 - 캐나다와 아이슬란드는 MGR이 in situ에서 수집된 것에만 해당함을 주장
- O (시간적 범위)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간적 범위의 규정을 지지하였으나, 모로코는 "no text"를 선호
 - 칠레, 캐나다, 아이슬란드, 미국 등은 이 문서가 발효된 이후 수집된 MGR에 대해 적용될 것에 동의
 - 중국, 노르웨이, 호주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당사국이 비준 및 승인을 한 이 후로부터 적용됨을 제안
- O (접근) CARICOM과 PSIDS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위한 독자적인 접근방식의 마련을 선호하였고, LMLAC는 모든 활동에 대해 접근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반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은 접근에 관련된 규정에 반대
 - PSIDS는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IPLCs)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허가/라이센싱 제도와 같은 재정적 이익공유를 위한 엄격한 접근 메커니즘을 도입을 주장한 반면 싱가포르는 IPLCs 및 전통지식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담아야할지의문을 제기
 - 중국, 일본, 호주 등은 ABNJ 내 MGR에 대한 접근의 제한을 반대하면서, 이러 한 접근에 관한 사항은 UNCLOS에 따라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

- 바티칸시국은 접근이 'exploration'이 아닌 'exploitation'에 중점을 두어야 함, 취약해양생태계에 관한 추가요건이 필요함, 해양과학조사(MSR)은 상업적인 의도로 인한 과학적인 이용과는 구분되어야 함 등을 제안
- 파푸아뉴기니(PNG)는 접근의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출처의 추적가능성과 공 개의 중요성을 강조
- 아이슬란드는 UNCLOS가 자유로운 접근을 규정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MGR에 대한 접근을 침해하고 MSR을 방해해서는 안 됨을 강조함. 특히, 어떠한 통지 메커니즘도 접근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됨을 확인

2. 해양보호구역 등 지역기반관리수단

- 효과적인 논의를 위하여 i) 절차(4.3), ii) 관련 문서와의 관계(4.2), iii) 이행(4.4), iv) 모니터링 및 검토(4.5), v) 목적(4.1) 의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
- 지역기반관리수단(ABMTs) 조정관(Facilitator)은 대표단들에게 ABMTs의 설정 의 주체와 방법, 그리고 어떤 규정이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지를 중심으로 논 의할 것을 요청함.
- O (절차) ABMTs 절차 규정에 있어 호주는 해양보호구역(MPAs)과 ABMTs 및 기존의 프레임워크들과의 일관성 증진을 강조하였고, 스위스, 세이셸 등은 MPAs와 ABMTs 간의 균형을 강조
 - 지리적폐쇄국(LLDcs)은 해당국가들의 특별한 요구 및 상황을 고려할 것을 강조
 -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제문서가 현존하는 지역기구를 대체하기 보다는 이들을 보충, 지원, 공지하는 기능을 해야함을 강조
- O (지역 확인) G77/중국, CARICOM, LMLAC 등 개도국들은 지역확인을 위한 기준에 관한 개방적인 목록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 제안된 지역확인을 국제문서에 따라 수행할 것, 국제문서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지역확인에 관하여 결정할 것 등을 주장하였고, EU, 중국, 러시아 등 선진국들도 특정 기준 목록화 개발에 동의를 표함.
 - 인도는 목록의 정기적인 수정을 제안하였고, 중국은 차후 기준개발을 위한 유 연성을 강조하면서 최선의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evidence)"에 기반해야 함을 언급
 -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해양산성화, 누적 및 월경성성 영향 등을 기준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
 - "사회적 및 경제적 요소" 기준에 대해 의견대립이 노정된 바, CARICOM, 중 국, 노르웨이, 방글라데시, 캐나다 등은 동 기준 마련에 찬성하였으나, 호주가

반대입장을 표명함.

- EU, 일본, 러시아,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등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과학적인 기준(internationally accepted scientific standards and criteria)"의 의미를 명확화할 것을 요청하였음.
- EU, 마이크로네시아, 카메룬, 뉴질랜드 등은 추가적인 정보로서 전통지식의 포함을 선호하였으나, 우리나라, 토고, 러시아 등은 지역확인 절차 단계에서의 전통지식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함.
- O (지정절차-제안) 기본적으로 많은 국가들(AG, 일본, EU, 미국, PSIDS 등)이 당사국이 사무국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할 것을 선호하였음.
 - 중국은 당사국이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과학/기술기구에 제출하도록 할 것을 주장 한 반면 PSIDS는 사무국을 통해 과학/기술기구에 제출하는 규정을 선호
 - CARICOM은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IPLCs)의 공동제출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선호
 - 우리나라는 지역적 메커니즘에 따라 직접적인 이익과 책임을 지닌 당사국만이 제안서 제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음.
- O (지정절차-원칙) EU, 토고, 스위스 등은 사전예방주의 '원칙'의 적용을 지지한 반면 미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은 사전예방주의 '접근'을 선호
 - 에리트리아는 해당 원칙들을 일반사항에 규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IPLCs의 관련 전통지식을 포함할 것을 요청함.
- O (내용) EU, 모나코, 스위스는 제안서 내용에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담을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PSIDS와 싱가포르는 제안서를 통해 ABMTs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집중해야함을 강조함.
 - LMLAC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개방적인 목록의 작성을 선호하였고, 뉴질랜드와 토고는 해당 목록이 수정가능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일본은 개방적인 목록의 채택보다 국제문서에서 제안서의 양식을 구체화할 것을 선호하였으며, UN공해어업협정(UNFSA)에서와 같이 사전협의 절차를 제안함.
 - 캐나다는 협약에 따른 기구에서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갖고 다룰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전략영향평가와 해양공간평가를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
 - 중국은 제안대상지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보호조치, 목표, 목적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음.
 - 에리트리아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정부간패널(IPBES) 프레임워 크를 기반으로 한 가치,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에 관한 정보, 인접성 개념의 명확화 등을 주장

- O (기간) 뉴질랜드, 토고 등은 기간의 규정에 반대(no text)를 표명한 반면, 싱가포르는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목적에 기간을 접목시킬 것을 선호함.
 - 에리트리아는 대상지의 주기적인 검토에 기반하여 기간을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미국과 노르웨이는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O (제안서 협의 및 평가) AG, 스위스 등은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개방적인 협의 방식을 지지하였고, 아이슬란드, 미국, 토고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목록화 규정에 반대를 표명함.
 - 일본은 관련 이해관계자 목록을 의사결정기구가 마련하도록 할 것을 주장
 - PSIDS는 필요한 경우 목록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과학적인 상호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문가풀을 포함할 것을 제안
 - EU는 제안서가 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지역적, 분야별 기구의 현존 하는 조치에 대한 보완성 및 양립가능성 고려, 중대한 문제 발생시 재협의 등을 제안하였음.
 - EU, AG 등은 제안서 검토의 주체로 과학/기술기구를 지지하였고, 중국과 필리 핀은 의사결정기구가 담당할 것을 주장하였음.
 - AOSIS는 협의절차상 SIDS 특별한 상황의 고려를 강조
 - 캐나다는 초기협의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진행, 추가협의는 관련기구 등 주요 관계자 등과 진행하는 등 단계별 접근을 제안
 - 스위스, 에리트리아 등은 인접 연안국가와의 협의 규정을 지지하였음.
- O (의사결정) 미국, 아이슬란드, 러시아는 의사결정 절차가 지역적 및 분야별 차원에서 과학적 정당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반면 AG, EU, CARICOM, PSIDS는 의사결정기구에게 지역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선호함.
 - 러시아는 필요한 경우 현존하는 기구의 역량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을 강조
 - 중국은 의사결정기구가 결정하되, 현존하는 국제기구의 임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됨을 확인함.
 - 뉴질랜드는 글로벌기구가 ABMTs 설정을 위한 우선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기구들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생물다양성협 약(CBD)의 생태학적·생물학적 핵심해역(EBSAs)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컨센서스) AG, 중국, 미국, 터키, 스위스, 일본, 우리나라 등은 컨센서스 기반의 의사결정을 선호하였고, LMLAC, 뉴질랜드, 토고는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선호함.
 - LMLAC는 의사결정기구가 모든 ABMTs의 지정을 결정할 것을 선호한 반면에

미국은 MPAs 지정의 경우에만 한정할 것을 선호하였음.

- (인접연안국) 일본, 중국, 미국, 우리나라는 인접연안국의 동의 요건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에 캐나다는 인접연안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함.
- 세이셸은 인접연안국이 의사결정 절차의 일부가 반드시 되어야 함을 강조
- 캐나다와 스위스는 의사결정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관련 글로 벌, 지역적, 분야별 기구의 권한의 인정(recognition)도 필요함을 강조
- 특히, 스위스와 바티칸시국은 향후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려할 것을 요청
-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의사결정이 관련 지역적 및 분야별 기구에 의해 이루어져 야 함을 주장하였음.
- 캐나다는 ABMT가 글로벌 차원에서 제안되어야 할지 여부는 사안별 결정에 따라야 함을 제시함.
- O (다른 문서상 조치와의 관계-일관성 및 보완성 증진) G77/중국과 AG 등 개도국들은 ABMT 조치의 일관성 및 보완성에 관한 옵션을 선호하면서 현존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거나, 현존하는 기구의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문서의 상하관계 구조 형성을 반대하면서 협의, 협력, 정보공유 등을 통한 일관성 증진을 강조함.
 - LMLAC,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국제문서가 현존하는 기구의 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ABMTs를 승인 및 설치하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선호
 - 이에 대해 러시아 등은 현존하는 ABMTs의 '승인'에 반대를 표명함.
 - 미국은 국제문서 중심의 ABMTs 체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새로운 국제문서 와 지역적·분야별 기구의 조치 간의 일관성 및 보완성에 집중할 것을 강조
 - EU와 뉴질랜드는 협력과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일반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설립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호주, 일본, 우리나라는 현존하는 문서들을 약화하지 않는 MPAs 네트워크를 선호
- O (협력 강화) LMLAC, AG 등 개도국들과 뉴질랜드 등은 협력과 조정의 중요 성을 강조하면서 조정 메커니즘의 마련을 지지한 반면에 미국과 중국은 국 제문서의 조정 메커니즘에 반대를 표함.
 - 일본과 러시아는 새로운 국제문서가 현존하는 문서를 약화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고, 아이슬란드는 지역해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역차원에서의 조정 메커니즘을 선호함.
 - 모나코는 협의 절차를 통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O (연안국의 권리 존중) EU는 새로운 국제문서가 UNCLOS상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언을 선호하였으나, 필리핀과 인도는 UNCLOS상의 권리, 관할권, 자유, 의무를(연안국의 경우 포함) 침해할 수 없다는 문언을 선호
 - LMLAC, 뉴질랜드, 터키, 호주, 아이슬란드 등은 연안국의 권리 존중은 일반사 항에서 다루어야 함을 강조
 - 터키는 MPA가 향후 대륙붕연장으로 인해 연안국의 관할권 내로 포함되는 경우 에 관한 의문을 제기
 - 중국은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ABMTs를 적용해서는 안 됨을 주장하였고, 일본은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당해 ABMT는 수정가능해야 함을 강조
 - 러시아는 MPAs가 경제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연안국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음.
 - 아이슬란드는 연안국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에 관한 적절한 고려(due regard) 를 요청함.
- O (양립성) EU와 팔라우는 ABMT 조치들의 양립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한 반면 중국, 호주, 일본은 양립성에 반대 또는 유보를 표명하였음.
 - 특히 중국은 ABMTs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안국 뿐 아니라 모든 관련국가가 협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양립성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을 강조
- O (인접성) PSIDS와 LMLAC는 인접 연안국과의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에 미국은 '인접성(adjacency)'의 개념의 명확화를 요청하면서 더욱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함.
 - 파푸아뉴기니는 포괄적인 협의를 위하여 인접 연안국에 대한 사전통보에 관한 규정을 제안하였음.
- O (이행) 다수 국가들이 이행에 관한 규정을 국제문서에 포함할 것을 선호하였으며, 특히 미국, 뉴질랜드, 우리나라,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등은 현존하는 기구들의 이행을 강조하였음.
 - EU와 CARICOM은 국가가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안
 - PSIDS는 SIDS를 포함한 연안국의 불비례한 부담을 피할 것을 요청함.
 - 일본은 비당사국의 협력의무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바티칸시국은 국가의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개념을 강조
 - 멕시코는 이행 사항을 결정하기 이전에 국제문서 체계상 다양한 부분 간의 상 호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O (모니터링 및 검토) LMLAC, CARICOM, 터키, 싱가포르 등 개도국들은 모니 터링 검토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에 미국, 일본, 아이슬란드, 러시아,

우리나라는 동 규정에 반대하면서 관련 글로벌, 지역적, 분야별 기구들의 역할임을 강조

- CARICOM, 터키, 싱가포르, 중국은 과학기술기구가 모니터링 및 검토를 수행해 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MLAC, 바누아투, 모나코 등은 이행준수위원회가 동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함.
- PSIDS는 과학적인 정보 및 지식에 전통지식을 포함할 것을 주장
-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글로벌 레짐에 따른 ABMTs 모니터링의 복잡성과 고비용 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EU와 스위스는 이행조치에 관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보고, 보고서의 공공 이용 가능성, 보존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 모니터링 등을 강조하였음.
- 일본과 아이슬란드는 정기적인 검토, 검토회의 수행 등을 제안하였으며,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ABMTs의 효과성과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검토를 구별해야 함을 강조
- O (목적) 다수 국가들이 목적을 목록화 하여 규정할 것에 동의하였으며,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이 목록을 보다 간명하게 작성할 것을 제안함.
 - EU, CARICOM, 모나코 등은 MPAs 네트워크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
 - CARICOM과 노르웨이는 결과지향적 목적을 선호하였고, EU는 사전주의원칙과 생태계접근, 협력과 조정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PSIDS는 문화적 가치의 보호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3. 환경영향평가

- 효과적인 논의를 위하여 i) 절차(5.4), ii) 보고서 내용(5.5), iii) 모니터링, 보고 및 검토(5.6), iv) 전략환경평가(5.7), v)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행위(5.3), vi) 관련 문서, 체제 및 기구 하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의 관계(5.2), vii) 환경영향평가 수행 의무(5.1)의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
- (절차) 우리나라, 미국 등은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 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후에 정하는 방안에 유연한 입장임을 밝혔으며, 일본, 러시아 등은 의장문서에 「월경성 환경영향평가협약」 제5조 및 제9조를 기초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일반적인 내용만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함.
 - 러시아, 일본은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결정, 관리하는 새로운 기구 설립에 반대하며, 의장문서의 규정 은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어야 한다고 언급
 - 팔레스타인(G77+중국), 알제리(아프리카 그룹), 솔로몬제도(태평양소도서국), 중

국, EU, 뉴질랜드, High Seas Alliance와 International Cable Protection Committee 등은 스크리닝, 스코핑, 영향 예측 및 평가, 감경 및 관리계획, 공개 및 협의, 대체수단, 통고 및 협의, 의사결정, 정보 접근, 준수, 집행, 잔여 영향 검토, 모니터링 이후 조치 고려 등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지지함.

- ※ 스크리닝은 특정 구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스코 핑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등을 선정하는 과정을 의미
- EU, 싱가포르는 의장문서상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중국은 의장문서가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되 강제성은 없어야 하며, "스크리닝, 스코핑, 평가, 통고 및 협의, 보고서 발간, 보고서 리뷰, 의사결정, 정보 접근, 모니터링과 리뷰"의 9단계 절차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
- O (스크리닝) 뉴질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는 당사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솔로모제도(태평양소도서국), 카메룬 등은 당사국이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되, 만일 당사국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국가가 아닌 사업 제안자(proponent of the planned activity)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에 반대
- O (스코핑)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등은 누적적 영향,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정보, 전통적 지식을 평가 항목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지지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등은 분석을 위한 영향과 대안의 확인 혹은 핵심 환경문제(key environmental issues)가 평가 항목이어야 한다고 주장
 - 미국, 캐나다 등은 잠재적 피해(potential damage)의 결정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면서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 O (영향 예측 및 평가) 솔로몬제도(태평양소도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캐나다, 카메룬 등은 영향 예측 및 평가는 전통적 지식과 대안 검토를 포함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은 전통적 지식을 활용하는 데 반대하였으며, 캐나다는 전통적 지식 활용에는 찬성하나, 전통적 지식을 과학정보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
 -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카메룬 등은 사업 제안자가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당사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솔로몬제도(태평양소도서국)는 당사국 혹은 독립기구(independent consultant)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 캐나다는 소도서국 등 개발도상국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한 역량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언급
- PSIDS, 호주 등은 과학/기술기구가 전문가 풀을 만들고, 당사국들이 이러한 전 문가들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지지
- O (감경 및 관리계획)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감경 및 관리 계획 제출 관련 규정을 의장문서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함.
- (통고 및 협의) 미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은 통고 및 협의 이해관계자의 목록을 의장문서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한 반면, 솔로몬제도(태평양소 도서국), 캐나다는 인접연안국, 여타 국가, 관련 기구, 전통적 지식을 지닌 토 착민 등 일부 이해관계자 목록을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함.
 - 노르웨이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환경영향평가 각 단계에서의 통보 및 협의를 규정하는 방안을 지지하였으며, 호주는 각 단계에서의 통보 및 협의에는 반대
 - 미국은 시한을 정해(time-bound) 일반 대중, 국제기구에게 환경영향평가 초안 문서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 PSIDS는 특별히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접연안국 및 여타 국가, 권한 있는 국제기구, 시민사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 캐나다, 노르웨이 등은 협의 과정에서 받은 중요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답신해 야 한다는 내용은 국가에게 지나친 부담이라며 반대한 반면, 호주, 뉴질랜드 등 은 동 내용을 지지
 - 미국, 호주 등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04조~제206조에 따라 당사국은 환경영향평 가 결과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해양법협약으로부터 동 보고서 공개 의무를 도출되는지 의문을 제기함.
- O (의사결정) 미국,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필리핀 등은 사업(activity)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사국이 동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PSIDS, 카메룬 등은 새로 설치되는 기구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PSIDS는 과학/기술기구가 검토하고, 의사결정기구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
- O (비용 부담) EU, 뉴질랜드, 호주 등은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 다는 의장문서 내용 관련, 비용 부담은 개별국가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O (추가 절차) CARICOM, PSIDS 등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관련 추가적인 구체 절차는 향후 새로운 기구에 의해 권고 혹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함.

- O (보고서 내용) G77/중국, AG, CARICOM, PSIDS,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뉴 질랜드, 필리핀 등 다수의 국가가 보고서 내용에 들어갈 요소를 상세히 규정하되 이는 예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 사회경제적 영향(socioeconomic impacts)' 포함 여부 등 상세요소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이견 존재
 - 중국은 상세내용 규정에 동의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는 어디까지나 국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협정에 국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구속력 없는 내용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함.
 - EU, 교황청, 스위스 등은 협정 본문에는 개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시키고 보조기구에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활동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worst-case scenario)' 등 일부 내용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포함시킬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함.
 - LALMC 역시 협정 본문에는 원칙과 가이드라인 정도의 개략적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 표명
 - 미국은 협정 본문에 규정할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이나, 이는 어디까지 나 가이드라인이어야 하며 당사국에게 그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의장 문서의 세부내용에 대해 의견을 밝힘.
 -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s)', '사회경제적 영향(socioeconomic impacts)', 활동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worst-case scenario)' 등 일부 의미가 불분명 한 내용 삭제 제안
 - 러시아는 환경영향평가의 수행과 판단 주체는 국가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서, 협정에는 구속력 없는 원칙과 가이드라인만을 규정해야 하며, 구체 절차는 현존하는 관련 기구들이나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O (모니터링, 보고 및 검토) G77/중국, AG, CARICOM, 인도, 이란, 싱가포르 등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04조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일반규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지함.
 - EU는 협정 하의 환경영향평가는 투명성과 용이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함.
 -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서는 검토 절차는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역시 검토 절차를 두는 것에 유보적이거나 반대 한다는 입장 표명
-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04조 내지 제206조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만이 수용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동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관련 모니터링 등의 의 무는 (행위자 등이 아닌) 국가만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 순한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언급
-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는 국가임을 강조하면 서, 모니터링 등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기술된 계획에 따라서 각국이 수행 할 사항이라고 언급
- O (이행준수) AG, 캐나다, 이란,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은 준수와 관련된 규정을 두는 방안을 지지했으나, EU, 싱가포르, 우루과이(라틴아메리카 유사입장국), 뉴질랜드, 중국, 칠레 등은 준수 관련 사항은 협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에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노르웨이는 의장문서의 관련 내용은 모두 별도의 준수 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염 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준수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방안을 지지함.
 - 미국, 일본, 호주 등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실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 야 그와 관련된 준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O (타국의 관여(Involvement of Other States)) 캐나다, 인도, 필리핀 등은 인접 연안국은 모니터링, 보고 및 검토 절차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받아야 한다 는 문안을 지지함.
 - 이란은 인접연안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것을 제안함.
 - EU는 관련 내용이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보고서 제출 단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미국은 스코핑이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 뉴질랜드, 중국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단계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언급
 - 싱가포르는 모니터링, 보고에 관한 사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야 하므로 타 국의 관여 관련 별도 규정을 협정에 둘 필요가 없으며, 정보 제공은 클리어링 하우스 메커니즘의 역할로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함.
- O (전략환경평가) AG, EU, CARICOM, PSIDS, 스위스, 뉴질랜드, 바티칸시국, 호주, 그린피스 등은 협정에 전략환경평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지함.

- EU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명시 할 것을 제안
- 한편, 노르웨이, LALMC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입장이지만 상세 논의가 더 필요 하다는 의견 표명
- 반면,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은 전략환경평가의 개념, 실효성, 대상, 기준 등이 모두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전략환경평가를 협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반대함.
- O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행위 요건 및 기준) AG는 사소하거나 일시적 인 것 이상의 환경영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잠재적 영향평가 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지지함.
 - CARICOM, 필리핀 등은 예상되는 영향이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 이상이라면 잠재적 영향평가를, 실질적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포괄적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지지함.
 - 우리나라는 예상되는 영향이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때에는 간소화된 환경영향평 가를, 실질적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포괄적 영향평 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함.
 - EU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판단기준으로는 행위의 유형, 장소, 해당 지역의 생태적 특성, 잠재 적 영향, 잠재적 누적 영향 등을 제시함.
 - ※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substantial pollution)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significant and harmful changes)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실행가능한 한 평가하고 제205조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송부한다.
 - 인도,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교황청, 뉴질랜드, 호주, 중국 등도 유엔해양 법협약 제206조와 동일한 발동요건을 주장
- O (행위 목록) AG, EU,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일본, 중국 등은 행위를 목록화 하는 것의 유용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방안을 지지한 반면 CARICOM, 스위스, 미국, 우리나라, 캐나다, 러시아, 싱가포르 등은 예시적 목록을 두는 방안에 찬성함.
 - 미국은 의장문서 중 "that require or do not require " 부분을 " that normally require or do not require "로 수정할 것을 제안
 - 우리나라는 예시적 목록을 두는 방안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그 목록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러시아는 환경영향평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는 목록화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
- O (누적적 영향) G77/중국, EU, CARICOM, 스위스, 미국, 캐나다 등은 누적적 영향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한 반면, 러시아, 중국 등은 누적적 영향 관련 규정 포함에 반대함.
 - 싱가포르는 누적적 영향에 관한 지식이 완벽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이 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
- O (생태적, 생물학적 중요 해양구역(EBSAs,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or Vulnerable) 관련 특별 규정) AG, EU, 미국, 러시아, 중국, 호주 등은 EBSAs는 환경영향평가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절차로서, 협정에 EBSAs 관련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반면, CARICOM, PSIDS, 스위스, 필리핀 등은 EBSAs에는 더 낮은 환경영향평가 발동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명시한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O (관련 문서, 체제 및 기구 하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의 관계) G77/중국, LALMC, 등은 환경영향평가 수행은 유엔해양법협약과 관습국제법 하의 의무에 부합해야 하고, 새로운 국제문서의 규정은 다른 관련 문서와 상호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을 지지함.
 - 이에 대해, EU,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우리나라, 이란 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관습국제법" 부분을 삭제할 것을 주장
 - PSIDS, 캐나다 등은 협정과 다른 기존 기구 간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으나,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은 협정과 기존의 체제·기구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며, 협정과 기존 체제·기구를 상하관계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러시아는 기존 체제·기구와의 협의에 반대
 - 우리나라, 러시아, 일본, 아이슬란드 등은 새로운 국제문서가 기존 체제나 기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기존 체제나 기구가 존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제문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IMO는 해양투기나 항해 등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는 런던협약과 런던 의정서 등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다고 설명함.
- O (환경영향평가 수행 의무) G77/중국, AG, CARICOM, PSIDS 등은 유엔해양 법협약 제204조 내지 제206 및 적용가능한 관습국제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에 찬성함.

-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일본,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등은 "적용가능한 관습국 제법"은 환경영향평가 수행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삭제를 주장

4. 능력배양 및 해양기술이전

- O 효과적인 논의를 위하여 i) 유형 및 방식(6.2), ii) 재정(6.3), iii) 모니터링 및 검토(6.4), iv) 목적(6.1)의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
- O (유형) G77/중국, EU, CARICOM, PSIDS, AG, 인도, 노르웨이, AOSIS, 뉴질 랜드,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은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의 유형을 협정 본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지함.
 - 다만, 현재 의장문서에 포함된 목록은 중복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간결하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
 - 우리나라는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의 유형은 공여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협정 본문에 규정하기보다는 보조기구 등이 구속력 없는 가이 드라인 형태로 유형을 목록화해서 각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일본, 러시아 등은 목록을 협정 본문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부속나 부록의 형태로 둘 것을 제안
 - 이와 관련, 미국은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의 목록화에는 동의하나 별도 의 보조기구에게 이와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는 유보적인 견해를 표명
 - 중국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이 협정의 다른 요소들과도 관련이 있으며 관련 있는 세부내용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목록의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O (방식) G77/중국, CARICOM, PSIDS, 자메이카, 싱가포르 등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의 세부 방식을 협정 본문에 규정하는 방안에 찬성함.
 - 상기 국가들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이 협정 발효 즉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부 방식을 협정 본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
 - AOSIS는 파리협정 제11조*,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규정 등을 협 정 본문에 인용할 것을 제안
 - ※ 파리협정 제11조는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한 고려, 국가별 필요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주도적 성격, 역량강화를 위한 행동이나 조 치에 관한 정기적 통보, 적절한 제도적 장치 설치 등을 규정

- EU는 협정 본문에 세부 방식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의장문서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은 삭제할 것을 제안함.
- 우리나라, 일본 등은 구체 방식, 절차 및 가이드라인은 추후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한다는 간략한 내용을 협정 본문에 규정하는 방안을 지지
- 노르웨이, 미국, 일본, 러시아, 호주 등은 해양기술이전이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강조함.
- UNESCO IOC는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IOC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면서, 동 가이드라인 내용이 BBNJ 협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 IOC(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는 2003 년 총회에서 "IOC Criteria and Guidelines on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를 채택한바, 동 문서는 해양기술의 이전은 언제나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고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공평한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
- O (정보공유체계) CARICOM, PSIDS, 인도, 필리핀 등은 최대한 상세한 내용을 협정 본문에 규정함으로써 협정 발효 즉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EU, 노르웨이 등은 협정 본문에 정보공유체계의 일반적인 기능을 규정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다만 협정의 다른 부분에 정보공유체계가 포함될지, 포함된다면 그 내용이 어떠할지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일본은 UNESCO IOC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하면서, 정보공유체계가 규칙 형성 기능을 담당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함.
 - 미국은 협정 전체에서 정보공유체계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결정되어야 이 부분 에 대한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O (재정) CARICOM, 일본, 우리나라 등은 재정 관련 사항은 협정 전체와 관련 된 일반조항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함.
 - 일본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의 체제와 내용에 따라 재정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
 - G77/중국, AG, EU, PSIDS, 에리트레아, 스리랑카, 토고, 카메룬 등은 의무적·자발 적 재정조달 방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스리랑카, 토고 등은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지속 가능하고 예측가능한 재정 조달을 강조
 - AOSIS는 GCF,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할 것을 제안
 - 인도네시아는 재정 메커니즘의 수혜자 관련, 군도국가나 인접연안국에 대한 특

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

- 다만, EU는 의무적 재정조달의 사용처는 기관의 운영이나 클리어링하우스 메커 니즘 운영비용 등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
-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미국, 우리나라 등은 자발적 재정조달 방식을 선호한다고 언급함.
- 중국은 의장문서가 재정에 관한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논의진행을 위해서는 간결한 내용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러시아는 협정에 재정 관련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재정은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그 조달이나 운영과 관련한 별도 기구를 두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의장문서 중 "endowment fund"에 대해 싱가포르가, "recovery fund", "liability fund"에 대해 중국이 각각 그 의미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함,
- O (모니터링 및 검토) G77/중국, AG, AOSIS, CARICOM 등은 모니터링과 검 토 관련 상세 내용을 협정 본문에 규정하는 방안에 찬성함.
 - AG, 캐나다 등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관련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제도를 제안
 - CARICOM, PSIDS 등은 소도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강조
 - 우리나라는 모니터링 및 검토와 관련된 별도 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사국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은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되, 제출 시기와 간격, 형식 등 세부사항은 협정의 의사결정기구가 결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호주, 캐나다 등도 의사결정기구가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
 - AOSIS, 호주, 싱가포르 등도 보고와 관련된 규정이 당사국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
 - EU, 노르웨이 등은 협정의 의사결정기구 결정에 따라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 전 활동에 대한 정기 검토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 일본은 수혜국이 공개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공여국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언급함.
 - 모니터링 및 검토의 주체와 관련, AG는 전문가 그룹이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는 방안을, 필리핀, 캐나다, 중국 등은 의사결정기구가 주체가 되는 방안을, 일본은 의사결정기구가 주체가 되되 관련 당사국 및 지역기구와 협의하는 방안을 각각 제안함.

- 미국, 러시아 등은 모니터링 및 검토 관련 별도 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함.
- O (목적-일반 목적 및 원칙) G77/중국, AG 등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의 일 반 목적 및 원칙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지지하면서 세부 내용을 제안함.
 - 우리나라는 BBNJ 관련 협정의 목적은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이며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역시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지적하면서,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에 관한별도의 목적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
 - 미국 역시 별도의 목적 규정을 두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 표명
- O (세부 목적) CARICOM, PSIDS, 필리핀, 태국 등은 세부 목적을 협정 본문에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한 반면, EU, 일본, 미국, 우리나라, 러시아, 호주 등은 상세한 세부 목적을 규정하는 것에 반대함.
- O (특수국가 범주) G77/중국, AG, CARICOM 등은 소도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중국 등은 개발도상국 및 내륙국에 대한 고려를 언급함.
 - PSIDS는 의장문서의 목록 중 "연안개도국"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함.
 - EU, AG, 인도네시아 등은 의장문서의 목록 중 "환경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취약한 국가"의 의미 명확화를 요청함.
 - 인도네시아, 토고 등은 특정 범주의 국가에 대한 특별대우에 찬성했으나, 미국, 노르웨이 등은 특별대우에 반대함.
 - EU는 국가들을 범주화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특별대우가 어떤 식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
 - 일본, 러시아 등은 특수국가의 범주를 목록화하여 협정 본문에 규정하는 것에 반대함.

5. 일반 사항

- 효과적인 논의를 위하여 i) 기구(IV), ii) 정보공유체계(V), iii) 검토(VI), iv) 일 반 요소(II), v) 일반원칙 및 접근법(III.1), vi) 국제협력(III.2)의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
- O (기구-의사결정기구) G77/중국, AG, EU, 캐나다, 아이슬란드 등은 당사국총 회를 의사결정기구로 두는 방안에 찬성함.
 - EU는 제1차 당사국총회 관련 사항을 협정 본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는 한편, 당사국총회의 기능 등을 목록화하여 규정하는 것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

- AG 등은 당사국총회가 관련 세계적·지역적·분야적 기구 간의 협력과 조정 절차 마련, 보조기구나 임시 작업반 등 설치, 모니터링 및 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
- 그러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은 당사국총회가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협정 불준수 문제를 다루는 기구로 기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
- 미국은 의사결정기구의 기능 역시 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의장문서에 서술된 내용 중 상당수의 기능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컨센서스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뉴질랜드는 협정의 의사결정기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다른 기구, 체제 등 과 중첩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함.
- 방글라데시는 총회와 이사회 설립을 제안했으나, 캐나다, 호주 등이 이에 반대함.
- 러시아는 비용효율적 구조를 강조하면서, 협정에 기구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 는 것에 반대함.
- (과학/기술 기구) AG, EU, 자메이카 등은 과학/기술 기구의 설치에 찬성함.
 - EU는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가 당사국총회의 위임에 따라 추가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면서, 독립된 과학전문가로 구성하거나 기존 다른 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 AG, PSIDS 등은 과학/기술 기구의 기능을 협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 기구가 해양유전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고 구역기반관리수단 및 환경영향평 가에 관한 권고를 의사결정기구에 부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PSIDS,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과학/기술 기구를 영구적 기구로 둘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 호주 등은 임시(ad hoc) 위원회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미국은 과학/기술 기구의 구조, 기능, 구성과 역할 등은 추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은 다른 문서, 체제 하의 기존 기구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언급함.
- O (기타 보조 기구) AOSIS, PSIDS, AG 등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별도의 재정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방안에 찬성함.
 - CARICOM은 통합적인 이행·준수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
 - EU, 미국 등은 부여되는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기구가 어떤 형태로 설치될지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보조 기구의 설립은 향후 협상 진행 과정을 보아가며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함.

- 중국은 보조기구의 필요성은 추후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
- O (사무국) G77/중국, CARICOM, LALMC 등은 사무국 설치에 찬성함.
 -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은 국제해저기구(ISA)가 사무국 기능을 할 것을 제안함.
 - 이에 대해 미국, 캐나다 등은 다른 기구의 사무국이 BBNJ 협정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구의 임무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동기구 내 의사결정도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함.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은 유엔해양법국(DOALOS)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에 찬성함.
 - EU, 스위스, 중국 등은 특별한 선호는 없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함.
- O (정보공유체계) G77/중국, AG, PSIDS 등은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일반규정을 협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지함.
 - AG는 의사결정기구가 정보공유체계의 세부 기능을 결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
 - EU, 뉴질랜드는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정보공유체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것을 제안함.
 - CARICOM은 정보와 장치에의 접근을 위한 중앙화된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PSIDS는 공개접근성, 웹기반 플랫폼에 대한 선호를 밝힘.
 - 캐나다 등은 전통지식의 포함을 제안
 - 미국, EU, 노르웨이, 러시아 등은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상세논의는 BBNJ 협정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가 선행된 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G77중국, PSIDS 등은 정보공유체계와 유전자은행과의 연결을, AG는 정보공유체계와 유전데이터은행과의 연결을 각각 주장함.
 - 반면, 노르웨이, 일본, 캐나다 등은 비밀정보의 기밀성 유지를 강조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은 사무국이 정보공유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지지함.
 - CARICOM, 인도네시아 등은 UNESCO IOC, 국제해저기구, 국제해사기구 등을, 노르웨이는 FAO를 정보공유체계 운영주체로 각각 언급
 - 이에 대해, 러시아, 미국 등은 다른 기구 등이 BBNJ 협정의 정보공유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표명
 - 캐나다,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호주 등은 정보공유체계가 재정 관리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반대함.
- O (검토) G77/중국, AG, CARICOM 등은 협정의 효율성 판단을 위한 검토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미국, 아이슬란드, 호주 등은 당사국총회가 매년 개최될 경우 별도의 검토회의 개최는 불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 O (일반 요소-용어 정의) G77중국, AG, 노르웨이, 일본 등은 관련 부분에 대한 실체적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세부적인 용어 정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아이슬란드, 교황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등은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그 의미가 합의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 중국, 태국, 우리나라 등은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나 유엔해양법협약에 존재하는 용어, BBNJ 협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 등에 대해서는 별 도 정의 규정이 불요하다고 주장함.
 - 싱가포르는 "현지내", "현지외", "해양유전자원"과 같이 용어의 정의 없이도 통용되는 용어들의 경우 굳이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
 - 러시아는 BBNJ 협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이 불요하다고 언급
- O (적용 범위) 방글라데시는 BBNJ 협정의 지리적 적용범위는 관할권 이원영역 이며, 여기에는 그 수역 및 하층토가 포함된다고 주장함.
- O (유엔해양법협약 및 여타 문서, 체제, 기구 등과의 관계) AG, PSIDS 등은 BBNJ 협정이 여타 관련 국제문서와 상호 지지하는 방향으로(mutually supportive manner) 이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함.
 - 이에 대해, 미국은 "상호 지지하는 방향"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
 - EU는 BBNJ 협정이 기존의 관련 문서, 체제 및 기구를 보충하고 이에 합치되어 야 하며, BBNJ 협정의 이행이 현존하는 문서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도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규정할 것을 제안함.
 - CARICOM, PSIDS, 벨리즈 등은 BBNJ 협정의 해석 및 적용은 기존의 관련 문서, 체제 및 기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
 - 중국은 기존의 관련 문서, 체제 및 기구 이외에 "관련 국제법(relevant international law)" 추가를 제안
 - LALMC, 일본, 러시아 등은 BBNJ 협정의 이행이 기존의 관련 문서, 체제 및 기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간략한 문구를 두는 방안에 찬성함.
 - G77/중국, 이란 등은 BBNJ 협정이 유엔해양법협약 등 여타 국제문서 비당사국 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는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함.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은 상기 의견들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 문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관련 문서, 체제 및 기구를 침해하

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언급함.

- O (일반원칙 및 접근법) G77/중국, AG, PSIDS 등은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가장 중요한 일반 원칙으로 제시했으며, AG, LALMC 등은 공해자유 원칙을 일반 원칙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함.
 - EU는 협정 내에 일반 원칙으로 언급되어야 할 원칙들과 협정의 이행을 위해 기능해야 하는 원칙 들을 구별해야 한다고 언급함.
 - CARICOM, PSIDS 등은 소도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언급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PSIDS는 전통지식의 역할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6. 향후 논의 진행방향 및 계획

- O G77/중국은 선택지 없는 협정문 초안을 의장이 준비한 후 차기 회의 두 달 전까지는 회람해주길 요청하면서, 제3차 정부간회의는 문안협상(text-based negotiation)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EU, AG, AOSIS, PSIDS, 필리핀 등도 동일한 취지로 발언하였고, 노르웨이도 협정 초안과 유사한 문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언급
- O EU는 현재의 회의 진행방식(전체회의→비공식 실무협의→전체회의 순으로 진행)은 협정 문안 협상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회의부터는 병행회의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이에 대해 CARICOM, 가나, 노르웨이 등은 병행회의 개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회의 진행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사회 등으로부터의 가급적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
- 러시아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문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특정 국가의 의견을 우선시할 수는 없으며 선택지나 대안 등이 제시됨으로써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기 정부간회의는 비공개·비공식 협의 형태로 개최하고 각국이 문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 이에 대해 필리핀, 중국, 미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은 비공식 협의 형태의 회의 개최에는 유연한 입장을 표명
- 중국은 의장이 금번 정부간회의의 결과를 반영해서 기존 의장문서의 중복되는 부분이나 어느 국가도 선택하지 않은 옵션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문서를 회람할 것을 요청하면서, 회기 간 모든 국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안 제안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 O 우리나라는 컨센서스를 기초로 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해진 시간표 에 구속되어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회의의 논의 대상 문서

- 의 명칭이나 형태, 회의 진행방식 등에는 유연한 입장이지만 많은 이슈에 대해 근본적 입장 차가 있는 현 단계에서는 완전한 협정 초안 형태를 만들기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표명함.
- O 미국은 금번 회의의 논의결과를 반영한 협정 초안에 가까운 문서를 의장이 준비할 것을 요청하면서, 아직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이슈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O 일본은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근본적인 의견 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의장이 새로운 문서를 준비하는 방안에는 찬성하지만 동 문서는 균형잡힌 것이어야 하며 섣불리 어떤 옵션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을 표명함.
- 의장은 향후 협정 초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와 내용의 문서를 7.25. 전까지 준비·회람하겠다고 하면서, 금번 회의에서 사용한 의장문서보다는 일반적인 협정 구조 및 용어 사용례에 따라 작성하겠다고 언급함.
 - 회의 진행방식에 관하여 소규모 비공식 회의나 병행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으나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병행회의는 개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투명성확보를 위해 회의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첨언

부록: 제2차 유엔 BBNJ 국제문서 성안 정부간회의 사진



정부간회의 회의장 1



<사진2> 제2차 정부간회의 회의장 2



<사진3> 제2차 정부간회의 대한민국 수석대표 <사진4> 제2차 정부간회의 대한민국 대표단





<사진5> 제2차 정부간회의 의장 및 운영진

* source : KMI, http://enb.iisd.org/oceans/bbnj/igc2/